

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설치·운영지침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(이하 “KAIST”라 한다)의 시설안전, 화재·범죄예방, 증거확보, 거동수상자 감시활동 등 공익목적의 CCTV설치·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구성원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CCTV”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·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일체의 통신장비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(Closed Circuit Television)을 말하며, 보안이 유지되는 네트워크 카메라도 이에 포함된다.
2. “개인정보”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·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(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3. “화상정보”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4. “정보주체”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.
5. “처리”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·저장·편집·삭제 및 재생,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① 시설안전·화재예방·범죄예방·증거확보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·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·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안전행정부 ‘공공기관 CCTV관리 가이드라인’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3. 3.23>

② KAIST가 설치·운영하는 CCTV로서 모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도 실제 화상정보의 취급 여부를 불문하고 이 지침을 적용한다.

제4조(화상정보의 보호원칙) ① KAIST 총장(이하 “총장”이라 한다)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.

- ② 총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에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③ 총장은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총장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,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침의 수립 등) ① 총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.

1. CCTV 설치의 목적
 2. CCTV 운영부서 및 책임관
 3. CCTV 위치·성능 및 촬영범위
 4. CCTV 촬영시간 및 화상정보 보유기간과 보관장소
 5.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·재생되는 장소
 6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사항
 7. 화상정보의 제3자 제공과 열람에 관한 사항
 8. 기타 총장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는 별첨1과 같다.
- ③ 총장은 이 지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6조(책임관의 지정) ① CCTV 설치책임관 및 운영책임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설치책임관 : 정보통신팀장 <개정 2013. 9. 1>
 2. 운영책임관 : 안전팀장 또는 설치요구·운영부서장
- ② 설치책임관은 CCTV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, 운영책임관은 CCTV의 운영 및 정보주체의 민원접수와 처리, 화상정보의 수집·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
제7조(설치에 따른 의견수렴) ① 총장은 일반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사전에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의 의견수렴은 행정예고, 공청회, 설명회, 설문조사 등으로 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의 의견수렴을 공청회로 하는 경우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의 내용이 CCTV의 설치에 관한 찬반 양론으로 대립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.

제8조(설치의 의뢰) CCTV를 설치하고자 할 때 설치요구부서장은 CCTV설치요청서(별첨2)를 작성하여 보안담당부서장의 보안성검토를 득한 다음 설치책임관에 설치를 의뢰하여야 한다.

제9조(보안대책) CCTV를 설치하고자 할 때 설치책임관은 보안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CCTV의 관리적·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.

1. 비인가자의 물리적 임의조작이 불가능하도록 CCTV 카메라와 중계서버 등을 보호하는 장치
2. 전송회선의 매설 및 보호도관 설치
3. CCTV, DVR(Digital Video Record), 출입통제장비 등의 보안관리 상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
4. 비인가자의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저장매체의 통제구역 보관
5. 내부망(인터넷망)을 통해 비인가자의 영상자료·카메라(비디오서버) 접근 등으로 인한 침해 및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접근통제대책

제10조(안내판의 설치) ① 설치책임관은 정보주체가 CCTV 존재 및 화상정보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, 이 안내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.

1. CCTV 설치의 목적
2. 촬영범위와 촬영시간

- 3. 운영부서 및 운영책임관, 연락처
- ②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.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일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조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.
- ④ 전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, 보안목표시설 등 안내판의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,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사실을 게재하는 것으로 안내판 설치를 대체할 수 있다.

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

제11조(화상정보수집의 제한)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되며,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(錄音)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2조(화상정보처리의 제한)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및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
- 2. 정보주체에게 열람·제공되는 경우
- 3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4. 신문·방송을 통한 언론보도목적으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- 5.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- 6.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- 7.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제13조(보호조치 등) ① 총장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·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,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. 다만, 방법·보안목적의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총장은 CCTV에 의하여 수집·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설치·운영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.

③ 운영책임관은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. 또한 CCTV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화상정보 관리 및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
④ 운영책임관은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·누출·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·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⑤ 총장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14조(열람 등의 요청) ① 정보주체는 해당 CCTV 운영책임관에 대해 문서(별첨3, 별첨6)로 화상정보의 열람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운영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③ 운영책임관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(정보통신망 포함)하여야 한다.

- 1.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2.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
- 3.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- 4.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

제15조(보유 및 삭제)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60일 이내로 하고, 60일 경과시 최초 촬영분부터 1일씩 자동 삭제한다.

제16조(화상정보취급자의 의무)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4장 보 칙

제17조(사무의 위탁) ① 총장은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장비와 기술, 전문인력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총장은 CCTV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·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,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·감독하여야 한다.

③ CCTV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KAIST가 요구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
제18조(다른 법률과 규정의 준용)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’ 및 안전행정부의 ‘공공기관의 CCTV관리 가이드라인’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13. 3.23>

제19조(적용배제) 이 지침은 그 직무를 막론하고 KAIST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근무감독을 목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CCTV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부 칙 <2011. 1. 24>

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법률 제11690호, 2013.3.23> (정부조직법)
이 지침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3. 9. 1> (직제규정 시행요령)
이 지침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첨1]

지침 제5조에 의한 별도 규정

1. CCTV 설치의 목적
KAIST의 시설안전, 화재·범죄예방, 증거확보, 감시활동 등 포괄적 공익목적
2. CCTV 운영부서 및 책임관
가. 설치부서 및 설치책임관 : 미디어지원팀, 미디어지원팀장
나. 운영부서 및 운영책임관

구분	생활관 내부	창의학습관	학과/연구센터 등	기타 공용시설
운영부서	학생복지팀	미디어지원팀	해당 부서	안전팀
운영부서장	학생복지팀장	미디어지원팀장	해당 부서장	안전팀장

3. CCTV 위치·성능 및 촬영범위
가. 위치 : 고정형은 건조물 천정 또는 부착적합장소, 회전형은 건조물 외부 별도 시설물
나. 성능 및 촬영범위

구분	고정형		회전형
	Dome	CCD	
성능	41만 화소/컬러/저조도	41만 화소/컬러/저조도	41만 화소/컬러/저조도
촬영범위(감시거리)	정면 5m~20m	정면 5m~20m	전후좌우 반경 50m
기타	네트워크연동 (IP전송방식)	네트워크연동 (IP전송방식)	네트워크연동 (IP전송방식)

4. CCTV 촬영시간 및 화상정보 보유기간과 보관장소

CCTV 촬영시간	화상정보 보유기간	화상정보 보관장소
상시(24시간)	최장 60일	※ 아래 5번 참조

5.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·재생되는 장소
가. 생활관 : 내부(사생활보호구역)-사감실(학생복지팀 소관), 외부-안전팀
나. 창의학습관 : 미디어지원팀
다. 도서관, 도로, 울타리, 기타 공용시설 : 안전팀
라. 학과/연구센터 등 자체설치지역 : 주출입구(일부)-안전팀, 내부-해당 학과/연구센터
6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사항
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(처리정보의 열람), 제13조(처리정보의 열람제한), 제14조(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), 제15조(불복청구), 제16조(대리청구) 및 본 지침 제14조(열람 등의 요청)에 의함.
7. 화상정보의 제3자 제공과 열람에 관한 사항
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(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) 및 본 지침 제12조(화상정보처리의 제한)에 의함.